
23년 윤리경영 시행계획(안)

2023. 6. 30

대한석탄공사

목 차

I. 윤리의식 확립	
1. 최고경영진 및 임직원 윤리경영 내재화	1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II. 관리체계 구축	
1. 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도	8
III. 윤리위험평가파악	
1. 공통·일반 윤리위험	9
2. 고유·핵심 윤리위험	10
IV. 윤리위험 통제활동	
1. 공통·일반 윤리위험 통제활동	12
2. 고유·핵심 윤리위험 통제활동	14
V. 내·외부 신고제도	
1. 내부고발제도	16
2. 투명하고 개방된 외부견제시스템 운영	16
VI. 윤리위험 모니터링	
1. 윤리위반 행위 개선	17

I. 윤리의식 확립

1. 최고경영진 및 임직원 윤리경영 내재화

1. 최고경영진 및 임직원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SWOT 분석

		기 회(O)	위 험(T)
내부여건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 ○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과제의 시달 및 발굴 지시 - 부패 취약분야 기관별 대책 수립 지시 등 ○ 윤리경영 지역 확산 여건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직원과 지역 간 높은 밀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호화(土豪化)된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지역사회와 유착 가능성 증대 ○ 협력업체 불만요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 지역경제의 위축 및 침체 - 매년 축소되는 사업 및 관련 예산 ○ 정부의 기능조정 폐광(廢鑛)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사기 및 청렴의지 저하요인 - 협력업체 불안의식 증가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 컨센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청렴도 하락과 이에 따른 자존감 상실 등을 극복하려는 기관의 높아진 반부패·청렴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전 임직원이 높은 수준의 청렴도 회복 의지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추된 청렴·윤리 회복 의지를 활용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 과제명 : 갑질예방 노력 강화로 내부체감도 향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노력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부패위험요소 선행적 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강화 - 과제명 : 고객접점 소통 강화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과 부패위험요소 사전 예방·점검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내 종사자가 많은 작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 괴리 ○ 경직된(권위주의)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및 고령화 - 순환보직 어려움 - 안전 중심 상명하복 관행 - 타 기관 대비 과중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방향 : 조직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준법 시스템 및 제도 구축과 반부패청렴·갑질근절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 표현, 교육과 간담회 활성화를 통한 기관의 제도,문화의 변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경직된 조직문화 변화를 통한 반부패·청렴 기반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방향 :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제한된 경영환경을 극복 부패위험요소 관리로 변화된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현장 구성원 중심의 부패위험요소 개선 및 반부패 문화 내재화
		전략방향 : 고객감동 및 사회적 책임준수 활동 (SWOT) 과제명 : 공적책무의 준수 및 강화	

2. 추진전략(방향)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방향

1). 경쟁우위 전략(SO)

공사의 종합청렴도 하락에 이에 따른 자존감 손상 등으로 기관의 하락된 반부패·청렴도 회복 필요성에 대하여 전 임직원이 높은 수준의 청렴도 회복 의지를 공유하고 있음. 이는 청렴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여 지역과 높은 밀착도를 가지고 있는 청렴정책 신뢰도 하락과 맞물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사의 청렴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전략방향 : 실추된 청렴·윤리 회복 의지를 활용한 기관장 주도형 청렴·윤리경영 실천으로 청렴문화 재정립
- 추진과제 : 반부패·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달성 점검회의 실시
- 세부과제 : <임원진의 적극적인 청렴의지 전파, 준법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청렴문화 활동 강화> 외

2). 위험 최소화(WO)

공사의 반부패·청렴 취약분야 분석 결과, 반부패·청렴정책의 확산이 어려운 업무구조 및 지속된 구조조정과 업무특성으로 인한 경직된 조직문화가 약점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패 및 내부통제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및 청렴·윤리 문화의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루어 냄으로써 실추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명예 회복을 위한 반부패·청렴 기반의 재정비 필요

- 전략방향 : 조직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반부패 청렴·갑질 근절 교육과 청렴 간담회 활성화를 통한 기관의 제도, 문화의 변화 및 체질 개선 추구
- 추진과제 : <경직된 조직문화 변화를 통한 갑질예방 및 행동강령 교육 강화로 반부패·청렴 기반의 확보>
- 세부과제 : <갑질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과 교육 활성화·청렴 시민관 제도의 운영 및 지역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적극참여> 외

3). 대비책 마련(ST)

공사 외부환경의 위험이 날로 가중되는 가운데 있음. 사회적 청렴 문화의 확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도 축소와 토호화된 지역경제와의 유착 가능성이 상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의 불만 요소 및 불안의식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반부패 청렴 컨센서스 내·외부 확대를 통한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방안의 지속적 확산 노력이 필요

- 전략방향 : 위험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 강화
- 추진과제 : <고객접점 소통 강화 및 교육활성화를 통한 부패위험요소 사전 예방·점검 및 통제>
- 세부과제 : <협력업체와의 청렴 간담회 활성화 및 고객 만족(갑질)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외

4). 생존 전략(WT)

공사의 반부패·청렴 정착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공사 임직원의 높아진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회복 의지를 바탕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부패위험 요소의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부패위험요소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

- 전략방향 : 구조조정의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부패위험요소 관리로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추구
- 추진과제 : <현장 구성원 중심의 부패위험요소 개선 및 억제>
- 세부과제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율적 과제 발굴 및 제도 시행> 외

3. 윤리경영 중장기 로드맵

(선진화 기반 도약 → 선진화 기반 재정비 → 글로벌 선진화 달성으로 모범 공기기업구현)

선진화 기반 도약		선진화 기반 재정비		글로벌 선진화 달성	
('19년~'20년)		('21년~'22년)		('23년~)	
윤리경영 기업문화 확산 - 기관 종합청렴도 : 1등급 - 부패방지시책평가 : 3등급		윤리경영 시스템 재정비 - 종합청렴도 : 4등급 - 부패방지시책평가 : 4등급		윤리경영 글로벌 리더 달성 - 청렴 체감도: 1등급 - 청렴 노력도: 3등급	
기 관 장	“청렴을 통한 반부패·윤리경영 혁신 / 변화로 인정받고, 청렴으로 더욱 사랑받겠습니다.”				
전략과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		청렴·윤리경영 생태계 확산		
전략방향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재정비		청렴·윤리문화 내재화와 지역확산 노력		
중 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임원진의 반부패 윤리경영 노력 • 준법 윤리경영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 갑질 근절대책 수립 안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대외 청렴확산 활동 강화 • 고객접점 소통 강화 및 교육 활성화 •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활성화 노력 		
세부 추진과제 (고유번호)	① 임원진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의지 전파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강화 ③ 부패위험 제거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강화 ④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 ⑤ 행동강령 위반행 및 갑질 근절대책 위반 행위 이행실태 지도 점검 강화 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⑦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각종 부패 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⑧ 지역 청렴행사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⑨ 협력업체와의 윤리경영 소통 강화 - 고객만족(갑질)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갑질근절)를 위한 제도 정비 - 지역사회(광업소) 청렴문화 확산활동 ⑩ 갑질예방 등 반부패·청렴 교육 활성화 ⑪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참여 활성화 ⑫ 청렴시민관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⑬ 민간단체와의 청렴사회 협약체결 및 협력활동 ⑭ 청렴·윤리 관련 평가결과·제도 및 실적의 청렴 포털 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개		
실행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윤리헌장, 윤리규정,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 (조직) 윤리·인권 경영 위원회, 이해충돌방지관,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감사자문위원회, 갑질전담 담당감찰관 				
모니터링 및 평가와 환류	Plan	계 획		실 행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환경 및 전년 성과 분석 • 청렴 윤리 실행전략 및 계획수립 • 기관의 특화성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윤리경영 제반활동 추진 • 규범실천 및 조직가동 • CS청렴채널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등 대내외 평가 • 청렴윤리 자가진단 • 윤리경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개선사례 도출 • 결과 피드백 및 공유확산 • 전년도 결과를 반영한 향후 계획수립 		
Check	성과 측정		공유 확산	Action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전략과제 :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

1. 기관징의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 의지 전파

- 추진방향 : 기관장 및 임원진의 청렴의지를 적극 전파
- 세부일정
 - 경영진의 반부패·청렴교육 활성화 노력 솔선수범 (연 2시간 이상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 기관장 주관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추진실적 점검 간부회의 (월별)
: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위한 부서별 추진실적 점검 및 반부패·갑질 근절 강화지시
 - 기관장 주관 청렴 간담회 (수시)
 - 기관장 주관 반부패 홍보 (홈페이지 사보 등)
 - 기타: 임원진 주관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청렴메세지 발송등 (수시))

2.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추진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강화로 윤리경영 안정적 정착
- 추진방향 : 부패 취약시기 점검 강화로 내부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강화 및 부패행위 근절
- 세부일정 : 상 하반기 년 2회 실시

3. 부패위험 제거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추진방향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 추진일정 : 상 하반기 년 2회 실시
- 점검 대상업무 : 국고보조금 수입지출 관리부서

4.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 (5월~9월)

- 추진방향 :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시행으로 참여형·자율형 제도 개선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대상과제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사항 개선
 -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추진일정 - 개선과제 공모(6월)→ 우수과제 선정·포상(8월)→이행점검·모니터링(9월)→과제추진 완료(10월)
- 포상 등
 - 선정과제 5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에 대한 포상
 - 청렴마일리지 부여/ 인사평가지 가점 부여

5. 행동강령 위반행 및 갑질 근절대책 위반행위 이행실태 지도 점검 강화

- 점검시기 :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주요 취약시기
- 점검횟수 : 연 5회 이상 (정부 평가기준_4회)
- 점검방향 : 기본에 충실한 기강감찰 및 청렴 문화 정립을 위한 암행 감찰
- 주요 점검대상
 - 행동강령 위반사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사 행동강령 「별표3」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위반행위 및 갑질 근절대책 위반행위 등

6.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추진목적 : 반부패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부패 행위 제거를 위하여 공사의 사규 개정
- 추진목표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법령의 제 개정에 맞추어 공사의 사규 제·개정하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확립

7.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각종 부패 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추진목적 : 전 임,직원 반부패 청렴 정책과 공익신고자호 제도의 내재화로 부패행위 예방
- 추진계획 : 소속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사 활용 전 임,직원 반부패 제도 교육 2회 이상 실시

전략과제 : 청렴·윤리경영 생태계 확산

8. 지역 청렴행사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 청정 강원 청렴한마당 행사 공동 참여로 강원지역 청렴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주도적 역할 수행
- 원주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홍보 및 참여 유도
- 청렴한마당 행사 축제 부스를 이용한 부패·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9. 협력업체와의 윤리경영 소통 강화

가. 고객만족(갑질)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 추진방향 : 고객만족도 및 갑질 무기명 설문을 통한 협력업체와의 소통 강화
- 설문대상 : 매분기 계약(구매,용역,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 설문방법
 - 휴대전화(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결과 및 개방형 질문에 대한 공사의 답변을 공사 SNS를 통해 공개
 - 설문대상자(설문 미참여자 포함)에 대한 사례 및 설문결과의 피드백 : 반부패.갑질 등 위험요소 발견시 추적조사 및 신고자 보호조치 즉시 실시
 - 설문대상자에 대한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나. 고객만족도(갑질근절)를 위한 제도 정비

구 분	내 용	비 고
갑질 관련 설문조사	• 분기별 갑질관련 설문조사 실시(5회) - 고객만족도(갑질) 설문조사 4회 - 내부 직원 갑질 설문조사 1회	
갑질 가이드 라인	• 갑질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행 홍보	
갑질신고 채널 운영	• 홈페이지 갑질신고 채널 운영(청렴포털 연계)	
갑질전담 감찰담당관	• 본사 및 광업소 갑질전담 감찰담당관 지정하여 운영	

다. 광업소 청렴문화 확산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상임감사가 광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직원 및 계약.협력업체 대표들과의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노력
- 추진일정 : 상·하반기 각 1회
- 세부일정 : - 광업소 직원 대상 청렴교육(상임감사 및 내부 청렴강사)
 - 상임감사 및 직원간 청렴간담회
 - 상임감사 및 계약·협력업체 대표간 청렴간담회

10. 갑질근절 예방교육 등 반부패청렴 교육 활성화

- 추진목적 : 전 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활성화로 청렴의식 제고
- 추진방향
 - 전 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2시간 이상 실시 (90% 이상) ('23.12.31 현원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실시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 기 타 : 소속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사 활용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갑질근절 예방교육 등 2회 이상 실시 (전 사업소 자체교육 실시 병행)
 - 갭내 위험작업 조건을 감안 협력업체와 작업 동선이 겹치는 관리자 대상 특별 갑질예방 교육 2회 이상 실시(전 사업소 자체교육 실시)

1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추진목적 : 구성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콘텐츠 확보를 위한 공모전 실시
- 참여대상 : 직원 및 가족과 일반국민 (지역사회 청렴문화 전파)
- 참여분야 : 포스터, 표어, 수기
- 피드백
 - 당선자에 대한 포상 및 청렴마일리지 수여
 - 당선작의 홈페이지 등 게시와 청렴콘텐츠 활용 등
- 청정 강원 청렴한마당 행사 공동 참여로 강원지역 청렴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주도적 역할 수행
- 원주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홍보 및 참여 유도
- 청렴한마당 행사 축제 부스를 이용한 부패·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12. 청렴시민관(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 운영목적 : 공사의 청렴성 및 공공정책의 투명성 제고
- 구성 : 본사와 광업소별 청렴옴부즈만 각 1명씩 위촉·운영
- 회의 등 : 불합리한 제도개선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에 대하여 적극 수용·반영 상·하반기 2회 실시
- 교류활동 : 3개 기관 이상 청렴옴부즈만 교류·협력(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적극참여
- 활동성과 : 시민감사관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감사 권고의 수용
- 공표 : '2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내역의 청렴포털 및 홈페이지 공고

13. 민간단체와의 청렴사회 협약체결 및 지속적 협력활동(상시)

- 운영목적 : 민간기관과의 부패방지 및 청렴관련 상호 협력, 정보교류 등 청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투명경영 및 청렴 조직문화 확산 도모
- 추진사항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투명경영 및 부패행위신고시스템 업무협약 체결('17.4월)
 - 협력분야 이행에 따른 자율적 평가 실시
 - 무기명 외부신고 시스템 위탁 운영 등 반부패 청렴 확산 활동 지속
 - 무기명 외부신고 시스템 홍보 및 인식 확산 노력

14. 청렴·윤리 관련 평가결과·제도 및 실적의 청렴포털 시스템 공개

- 추진목적 : 공사의 청렴·윤리 관련 평가결과·제도 및 실적 대국민 정보공개
- 추진계획 : 연중 수시

기타 : 1기관 1실천 과제의 선정

15. 청렴행정·청렴경영 1기관 1실천 (상시)

- 추진제목 : 석탄통신*
 - 국민 지역사회와의 청렴컨센서스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의 활성화
(* 석탄공사의 기탄없는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매년 급격한 감원 및 예산 감축으로 지역사회, 협력업체와의 상생 및 신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의 청렴정책 및 다양한 콘텐츠의 온·오프라인으로 공유를 통해 국민, 지역과 함께하는 종합청렴도 선도기관으로 발돋움
- 추진과제
 - 지역 봉사활동, 설문조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사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

세부 추진과제	추진내용	비고
카카오톡 청렴채널	임직원, 지역, 협력업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청렴 플랫폼의 폭넓은 운영	상시
청렴서신	고객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감사 명의의 청렴서신 발송 및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 홍보	연4회
청렴메시지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청렴성에 대한 주문	연4회
청렴간담회	임원진의 적극적 참여로, 공사의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	수시
	협력업체 관계자와의 청렴간담회를 통해 공사의 청렴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	수시
고객만족(감질) 설문조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및 감질 등에 대한 무기명 설문을 주기적으로 (매분기) 실시하고 이를 공사의 청렴정책 수립에 반영	매분기
사업소 순회 청렴 간담회	상임감사 사업소 순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청렴간담회 개최로 소통을 통한 청렴의식 공유	6월~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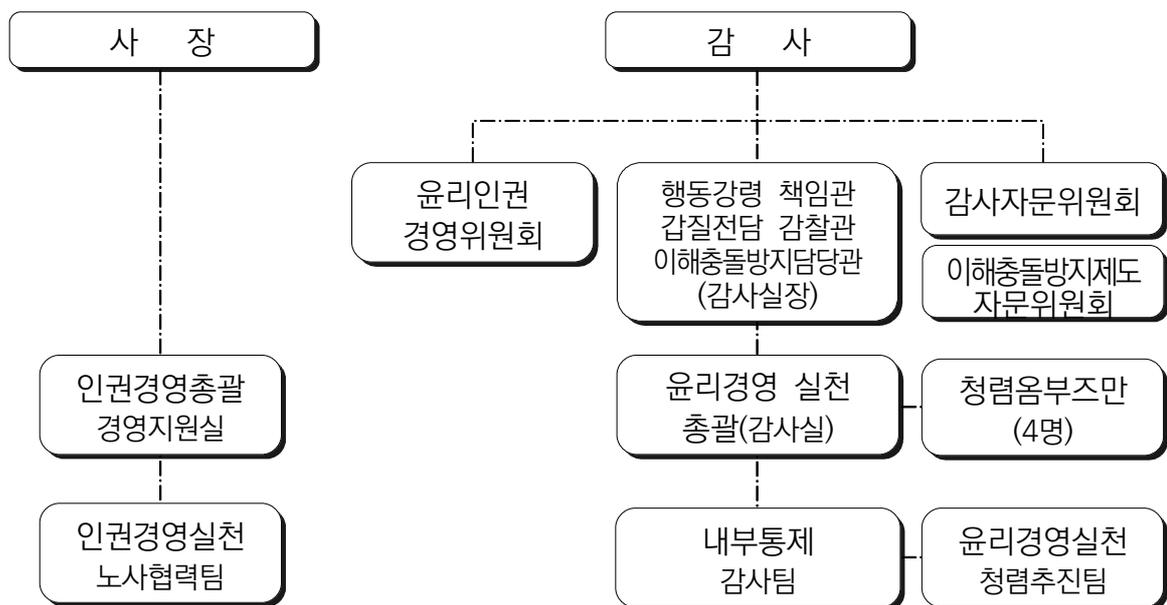
II. 관리체계 구축

1 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도

1.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비전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윤리 모범기관 석탄공사 실현		
전략	조직, 제도, 의식이 함께하는 전방위적 윤리경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청렴·윤리경영 운영계획 수립 • (의식) 기관장·임원진의 반부패 윤리경영 노력,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활성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소통하는 청렴·윤리 조직 운영 • (활동) 비대면 대외 청렴확산 활동 강화, 지역 사회에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활동 	
목표	전방위적 윤리경영 추진으로 국민신뢰 제고		
추진 전략	견고한 조직	투명한 제도	실천하는 의식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위원회 • 감사자문위원회 • 청렴윤리실천리더, 옴부즈만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이해충돌방지제도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갑질근절 제도 정비 • 기업 회계 신뢰도 제고 • CS청렴채널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의식 조성 및 확산 • 무기명 신고문화 정착 • 청렴 윤리경영 활동 추진
윤리 규범	• 윤리 헌장 및 강령	• 임직원 행동강령	• 임원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평가 및 환류	내부평가	외부평가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설문조사 • 청렴윤리 자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청렴도 평가 •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개선, 우수사례 공유 • 결과 및 특성을 계획 반영

2. 조직도



III. 윤리위험 파악

1 공통 · 일반 윤리위험

구 분	세부 내용
내부 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 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3개년간 권한 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발생 가능성 상존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요구 등 상대방에게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3개년간 권한 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발생 가능성 상존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외부 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 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권한 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17%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구 분	세부 내용
회계분야의 공정·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회계분야의 사적이익관계 배제한 공정·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부당한 집행 근절 - 예산집행 시 사적이익추구 배제 - 자금 관리 시 횡령·배임 근절 - 일일 자금 관리 모니터링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회계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인사,채용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인사, 채용 분야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근무부서 배치 등을 사적이익관계에 따른 부당한 집행 근절 - 공정채용 검증위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인사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과거 발생한 인사 비리를 감안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행정감사업 무 공정성 및 투명성 과 적극행정 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공사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행정감사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 과 적극행정 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감사 시 사적이익관계에 따른 부당한 감사근절 및 적극행정 수행자에 대한 보호 노력 강화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행정감사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p>평가(수상,포상) 업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공사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평가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업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집행 근절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인사 및 경영실적 평가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p>조달·구매 계약·검사· 검수 관계 직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공사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 확보 및 공사의 협력업체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 과 적극행정 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집행 근절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인사 및 경영실적 평가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p>보조금등의 배정·지급· 처분·관리 관계 직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공사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각종 기금관리업무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업무 수행 시 지연 학연, 혈연에 따른 부당한 집행 근절 ■ (대상) 최고경영진에서 실무진까지 공사 및 관련 조직의 모든 인사 및 경영실적 평가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 ■ (위험수준) 특수한 업무영역을 틈탄 개인적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3개년 평균 임직원 규모 대비 0% 수준 발생하는 상황 → 사규의 적절한 집행으로 통제 가능한 일반위험으로 관리

IV. 윤리위협 통제활동

1 공통 · 일반 윤리위협 통제활동

구 분	세부 내용
내부 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갑질근절 추진계획과 갑질예방교육 실시로 갑질 근절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예방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및 내·외부 청렴강사 교육 실시(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고객만족도(갑질) 무기명 설문조사 분기별 실시 및 참여 확대 홍보를 통해 기존 갑질유발 규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 집중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 조항을 명시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차원에서 반기별로 설문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주기적인 갑질 실태 조사 실시(현행 년 1회) ■ (처벌강화) 중대한 갑질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로 중징계 요구시,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 악의적 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갑질행위자 승진 심사 강화 - 갑질 행위자의 상급 관리자가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하도록 사규 개정 ■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 피해자 행동요령 안내, 심리 상담 등 피해자 보호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부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성희롱 근절 결의대회 등 갑질 근절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대상 성희롱 근절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년 2시간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남녀 고용평등법 및 인권위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규개정 등 개선사항 집중 발굴(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년중)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성희롱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고객만족도(갑질) 설문조사 실시, 사례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주기적인 성희롱

	<p>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분석 향후 추가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자가진단확대실시(성희롱 자가진단실시)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희롱 감수성 확인 ■ (처벌강화) 성희롱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처벌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사규 개정 방안 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로 중징계 요구시,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 악의적 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갑질행위자 승진 심사 강화 - 갑질 행위자의 상급관리자가 갑질은폐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하도록 사규 개정 ■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 피해자 행동요령 안내, 심리 상담 등 피해자 보호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부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 - 공사 내부에 성희롱 처리규범 및 기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 확립
외부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갑질근절 추진계획과 갑질예방교육 실시로 갑질 근절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예방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및 내·외부 청렴강사 교육 실시(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고객만족도(갑질) 무기명 설문조사 분기별 실시 및 참여 확대 홍보를 통해 기존 갑질유발 규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 집중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 조항을 명시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고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차원에서 반기별로 설문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주기적인 갑질 실태조사 실시(현행 년 1회) ■ (처벌강화) 중대한 갑질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로 중징계 요구시,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 악의적 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갑질행위자 승진 심사 강화 - 갑질 행위자의 상급관리자가 갑질은폐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하도록 사규 개정 ■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민형사 소송 등 법률지원, 피해자 행동요령 안내, 심리 상담 등 피해자 보호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부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플랫폼을 도입하여 운영

구 분	세부 내용
회계분야의 공정·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등 대외기관 회계전문 교육 확대 및 복무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인사 규정 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한 회계처리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현금 및 예금등 유동자산 점검 시스템 운영으로 횡령·배임 등 부당한 회계처리 근절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회계분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수시 감사 및 감찰 등을 통해 주기적인 회계 실태조사 실시 (현행 년 1회)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회계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인사,채용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인사 채용제도 개선과 대외기관 인사전문 교육 확대 및 복무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인사 규정 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 행위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여 부당한 인사처리 근절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인사분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수시 감사 및 감찰 등을 통해 주기적인 채용 실태조사 실시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행정감사업 무 공정성 및 투명성 과 적극행정 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공사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행정감사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 과 적극행정 지원 확보 ■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강화 및 감사 규정 등 사규에 명백한 위법 행위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 - 이의신청제도 적극 홍보 및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를 사규 제정을 통해 설치 운영 ■ (현황조사) 감사부서 감사 종료 후 감사실시에 대한 무기명 감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 따른 감사방안 수립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p>평가(수상,포상) 업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인사 평가제도 개선과 대외기관 인사전문 교육 확대 및 복무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인사 규정 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 행위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여 부당한 평가처리 근절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인사평가분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수시 감사 및 감찰 등을 통해 주기적인 채용 실태조사 실시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p>공사·용역 물품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 관계직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계약관련 제도 개선과 조달청,감사원 등 대외기관 공사,용역등의 계약 전문 교육 확대 갑질예방,반부패 청렴교육 확대 및 복무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계약관련 규정 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 행위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여 부당한 평가처리 근절 ■ (현황조사) 감사부서에 계약 및 갑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수시 감사 및 감찰 등을 통해 주기적인 계약관련 업무 실태조사 실시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p>보조금등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공정·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확산) 공사 자산관리 분야 제도 개선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사항 사전 교육 확대 및 복무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년 2시간 이상 실시) ■ (제도개선) 이해충돌방지법 및 회계규정 등 사규에 명백히 위법 행위 시 징계양정 기준을 명시하여 부당한 회계처리 근절 ■ (현황조사) 이해충돌방지관 및 감사부서에 회계분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수시 감사 및 감찰 등을 통해 주기적인 자산관리 실태조사 실시 ■ (처벌강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징계수위를 상향하도록 사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 반복적 위반행위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시 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강화

V. 내·외부 신고제도

1 내부고발제도

1. 비밀이 보장된 내부고발제도 정비

- 추진목적 : 내부고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공사 내부의 분야의 부패 행위 제거를 위하여 공사의 사규 정비(수시)
- 추진목표 : 내부고발 신고자 보호 법령의 제 개정에 맞추어 공사의 사규 제·개정하여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확립

2. 투명하고 개방된 외부견제시스템 운영

활동유형	주요 내용
청렴음부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내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제3자 입장에서 독립적 검토 ⇒ 외부위원 4명 위촉, 반기별 정례회의 및 제도개선 제안
청렴시민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타기관 협업 간담회를 통한 사례 공유 확대, 관련부서 안건 공모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시민감사관 운영확대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및 부패위험 사전제거
감사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자문위원 5명 위촉 : 회계, 법률, 재무, 감사 전문가 5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외부익명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강화 및 일반 국민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와 협약체결 지속 유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공사 홈페이지 링크 연계

VI. 윤리위협 모니터링

1 윤리위반 행위 개선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경영평가	1.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실행력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을 모니터링 하는 총괄조직 구축 또는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통합운영(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 윤리 와 인권 분야를 통합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협력업체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 판매업체(연탄공장) 고객 만족도(갑질) 조사 확대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인권경영 체계 점검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및 규정 등 개정 ■ 고객만족(갑질) 및 내부 갑질 설문조사 시스템 강화(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갑질설문조사 4회실시 : 설문결과 대고객 피드백 실시 • 내부직원 무기명갑질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 대고객 피드백 실시 ■ 내부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전년대비 0.08점 ↑) 								
	2. 부패방지 제도구축과 부패 위험요인 발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제도개선과 발굴노력 지속(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위험제거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22건 발굴(전년대비 14건 ↑) 4건 포상 실시 ■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위험제거노력 100점 달성(전년대비 18점 ↑) 								
	3. 갑질(인권)신고센터 상담/ 조사실적 미흡(신고건 없음), 익명신고시스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 유도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개선)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신고시스템 신고 모의훈련 실시 및 홍보 강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92건에서 금년 117건으로 모의신고 참여 확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전년</th> <th>금년</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무기명 훈련 신고인(건)</td> <td>92</td> <td>117</td> <td>+25 ↑</td> </tr> </tbody> </table>	구분	전년	금년	증감	무기명 훈련 신고인(건)	92	117	+25 ↑
	구분	전년	금년	증감						
무기명 훈련 신고인(건)	92	117	+25 ↑							
4.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 면책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감사시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시행 단계에서 제도와 방법을 적극 홍보 • 고철매각 등 사전컨설팅 2건 실시하여 방안 제시 ■ 적극행정 면책 발굴 및 사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책에 대한 사례집 홍보와 감사 심의단계에서 직권면책 발굴 • 수도료 증가 등 적극행정 면책 2건 인용 									